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 영 미 의원)

의안 번호	23-182
----------	--------

발의년월일: 2023. 11. .

발의자: 김영미,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남해석, 오욱자, 이한동, 차해영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생일 특별휴가 신설 및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 확대 등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휴가 개정(안 제14조)

- 포상휴가 부여 판단기준 구체화(제4항)
-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일수 확대(제6항)
- 생일휴가 신설(제9항)

나.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 개정(안 별표 3)

다. 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일수 개정(안 별표 4)

3. 관계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 조 례 안 : 불임

5. 예산조치 : 불임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2023. 11. 17. ~ 11. 22.

나. 의견제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그 성과와 공로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별표 4 제2호나목 중 “2일”을 “3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9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0일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 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특별휴가) ① ~ ③ (생략)</p> <p>④ 의장은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연간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p> <p>⑤ (생략)</p> <p>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제14조(특별휴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있으며, 그 성과와 공로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⑤ (현행과 같음)</p> <p>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p> <p>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p> <p>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p> <p>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p> <p>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p>

⑦·⑧ (생략)

<신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4조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2조 관련)

⑦·⑧ (현행과 같음)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 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4조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제12조 관련)

<p>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u>2일</u>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p>	<p>1.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 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p> <p>2.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 안함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u>3일</u>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p>
---	---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재정 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12조제2항2호)

3. 미첨부 사유

-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행에 따른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최은영
연 락 처	02-3153-6164